

고 발 장

고발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Sexual Slavery by
Japan)
공동대표 이 효 재 (李孝再)
윤 정 옥 (尹貞玉)
김희원

주소: 한국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
독교회관 307-A호

연락처: 日本國 東京都 新宿區 西早稻田
2-3-18 日本基督教協議會 女性委員會

피고발인 성명미상 책임자 다수

위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등 피의사건으로 고발하
오니 수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에 관하여

(1) 고발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에 관하여

고발인은 1990년 11월 16일 한국의 18개 사회, 여성단체가 모여 일본에 의해
과거 전쟁기간동안 저질러진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로 말미암아 참혹한 고통
을 당하고 있는 '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하여 탄생되었습니다. 고발인 '한
국정신대대책협의회'는 그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1.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
2.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의 활동과 국제
인권 NGO들과의 연대활동
3.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군위안부' 희생자들을 위한 부조활동
5. '군위안부' 희생자들의 생활기금 및 운동을 위한 모금활동

고발인의 이같은 헌신적 활동은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와 같은 유

명한 국제인권단체들의 지원과 격려를 받기에 이르렀을 뿐만아니라 필리핀, 대만, 북한 등 수많은 '군위안부' 희생자를 간직하고 있는 피해국가들에서 유사한 단체의 조직과 탄생을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캐나다의 토론토등지에 고발인의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이 생겨난 것도 주시의 사실입니다. 이와같이 고발인은 한국에 생존중인 대다수의 '군위안부' 희생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을뿐만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내외에 걸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 온 단체입니다.

(2) 피고발인들에 관하여

불행히도 고발인은 당장 피고발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모두 정확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른 사람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얼굴없는 범죄자, 성명없는 피고발인 -- 이것이 이 사건의 비극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 이 문제가 세상에 곧바로 드러났다면 정의의 법정에서 수백, 수천의 잔혹한 범죄자들을 우리 피해자들은 지금 단 한명의 이름, 주소도 밝힐 수 없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을 밝혀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의 범행에 의하여 생겨난 피해자들의 증언과 당시의 여러 역사적 자료들에 의하여 피고발인들의 범행은 대체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피고발인이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가는 '군위안부'의 범행이 저질러진 당시의 일본제국군내와 일본제국 정부에 소속되어 있던 책임자급의 군인과 관리들, 피해자들을 직접 징용, 배치, 관리하였던 소속부대와 그 부대의 명령을 이행하였던 민간인들을 현재 발굴된 자료들의 명의를 검토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파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범죄행위에 가담한 해야될 수 없는 상교와 사병, 군속과 민간인이 있겠지만 이 모두의 처벌을 우리가 원하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사의 대상이 처벌이 되어야 하는 부류는 당시 '성적노예제'로서의 '군위안부' 제도를 기획, 입안하고 이를 집행하도록 지시, 명령하였던 중요 군인 지휘자들, 이들 '군위안부'를 폭행 및 협박, 기망에 의해 모집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군인, 군속, 민간업자들, 그리고 그 위안소를 관리, 운영한 부대의 책임자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미 사망하였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도 70대에서 8-90대의 노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나이와 세월의 경과가 정상참작의 사유는 될 지언정 처벌의 면책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1) '군위안부'들에 대한 범죄의 개관

일본은 1876년 조선의 개항과 더불어 제국주의적 마수를 뻗쳐오던 끝에 1905년 조선의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 기망하여 외교권을 박탈한 이른바 '을사조약'을 체결케 하고 마침내 1910년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을 강제 체결한 이래 한국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미국과 자연자원의 약탈, 일본식으로서의 창씨개명과 모국어사용의 금지등 이부 해야될 수 없는 고통을 부과하며 한국인을 노예상태로 만들어 통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역사상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잔혹한 범죄행위가 자행된 20여만명의 부녀자들이 일본군을 위한 성노예가 되도록 강제당했던 것입니다. 일본군이 주둔한 중국으로부터 시작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의 개시와 더불어 태국, 버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거쳐 남태평양에 위치한 수많은 섬들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이 주둔한 모든 장소에 설치된 위안소에 배치되었습니다. 1930

년대 초반 만주사변과 상해침공 이후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점령지에서의 강간, 약탈을 방지하며, 성병을 예방한다는 미명하에 시작되어 전 전신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1945년 8월 일본의 완전한 항복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가엾은 피해자들은 거의가 20세 미만의 어린 소녀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이미 결혼을 한 20대의 유부녀도 적지않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한국을 통치하고 있던 군인과 관리, 또는 그들의 촉탁, 지정을 받은 민간업자들에 의하여 폭행, 협박, 기방등의 방법으로 연행되어 그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비극의 운명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원, 연행된 피해자들은 일본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된 군 위안소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위안소는 군이 설립하여 군이 경영한 경우, 군이 설립하고 민간인이 경영한 경우, 민간인이 설립하고 민간인이 경영한 경우등 여러가지 유형으로 존재하였으나 그 어느 경우에도 청결점사, 위안부 정기검진등 군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고 있었으며 군이 정한 위안소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이들에게 지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적게는 10여명, 많은 날은 50명, 또는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군인들을 맞아 성적 처리를 해 주도록 강요되었던 것입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군인들의 감시에 의하여 탈출이나 외출이 금지, 제한되었으며 폭행과 구타가 잇따랐습니다. 이들은 성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치료와 영양공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진퇴를 거듭하는 군인들과 함께 전장을 옮겨 다니는 중에 공습, 전투, 사고, 질병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 일본군의 패주가 시작되면서 이들 피해자들도 그들을 따라 나섰으나 이들에게 일본군은 철수사실 자체를 알려주지 않곤 하였습니다. 특히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남서태평양의 군도지역 전선에서는 대부분의 '군위안부' 피해자가 일본군에 의하여 버림받고 치열한 전투의 와중에서 죽거나, 일본군과 함께 철수하는 도중에 장기간에 걸친 행군과 기아, 현지인 게릴라부대에 의한 공격등으로 사망자가 많았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낙오되거나 체포된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미군등 연합군에 의하여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군정당국이 주선하는 수송선으로 귀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지않은 '군위안부'들은 수치심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키나와, 태국, 베트남, 대만등지에 남았고, 일부는 일본으로 돌아가 정착한 사례들도 발견됩니다.

(2) '성적 노예제'로서의 '군위안부'제도

이상과 같은 피해자들의 연행, 수송, 배치, 위안소 생활의 전과정에서 추출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들이 '성적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은 전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연행되고 동원되었으며 강제로 성적 봉사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연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방, 폭행, 협박, 권력남용'등이 모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강제적 수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였거나 빈곤한 농촌의 처녀들이었으며 어떠한 배후의 경력이 전혀 없는 순진한 부녀자들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강제성을 인정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안소에 배치되어 막대한 숫자의 군인들을 상대하여 성적 봉사를 강제당한 것 역시 강간의 연속에 다름아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도주와 탈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감시와 감금이 계속되었을 뿐만아니라 머나먼 이국땅에 잠시 탈출하였더라도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로서는 그 지옥같은 생활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수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3) 피고발인들의 관여와 개입의 명백성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일본제국군대와 일본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확인

되고 있습니다. 생존하고 있는 '군위안부' 출신 피해자들의 증언은 말할 것도 없고 적지 않은 자료들이 위안소의 설치, 운영과 위안부의 모집과정에 일본 군부와 관리들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위안소 설치와 '군위안부' 모집에 관한 최초 기획과 결정과정에 관한 과정과 책임자들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육군중앙과 해외파견군 사이에 오간 당시 문서들을 검토하면 1937년 이후 1945년까지 사이에 육군중앙의 중요지휘관과 해외파견군의 중요지휘관으로 근무했던 자들은 거의 대부분 군위안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직접 개입하고 있었음이 분명해 집니다. 이들은 출동지역의 장병들의 성병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안소관리의 철저를 지시하는 등의 관여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군위안부 배치를 요청하는 전문이나 예하 부대에 대하여 내린 통첩능에 의하여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군위안부'의 모집, 도항 또는 위안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교신한 것들이 남아 있고 이 가운데 발신자와 수신자, 그 내용을 종합 검토하면 그 책임자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위안소와 '군위안부'와 관련하여 발굴된 자료에 나오는 부대와 그 책임자의 이름을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파견군에 의한 군위안소의 설치.

1932년 3월 상해파견군: 강촌영파 참모부장, 강부직삼랑고급참모, 영견준
덕참모
1937년 12월 중지나방면군--상해파견군: 참모제2과 장용참모
1937년 12월 제10군: 사전 참모
1938년 6월 북지나방면군: 강부직삼랑 참모장
1941년 7월 관동군:원선사랑참모 --- 조선총독부
1942년 3월 남방군--대만군:안둥이길 군사령관, 요구경칠랑 참모장 --육
군성 허가

** 육군중앙에 의한 중군위안부정책의 통제와 지도

1938년 3월 4일 육군성부관통첩 '군위안소종어부등모집에 관한 건'
1940년 9월 19일 육군성부관통첩 '지나사변의 경험으로 본 군기진작대책'
1941년 7월 26일 육군성:외무국 심전군의소좌: 인도네시아에서의 강제적
징집계획
1942년 1월 14일 외무대신 '남방방면 점령지에 대한 위안부도향방의견'
1942년 3월 남방군--대만군:안둥이길군사령관, 용구경칠랑참모장-- 육
군성의 허가
1942년 6월 18일 육군성부관통첩 '대동아전쟁관계장병의 성병처리에 관한
건'

3. 피고발인들 행위의 평가에 관하여

(1) 비인도적 범죄의 국제법적 정의

이상과 같은 군위안소의 조직과 운영, '군위안부'의 모집과 배치, 성적 봉사
의 강요등은 당시 일본의 국내형법에 의해 판단하더라도 부녀자 약취, 유인, 감
금, 강간, 폭행등의 법적 평가를 내리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적 평가는 일본국내법상의 공소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더 이상 문제삼
기 어렵습니다.

한편 위와같은 행위를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쟁범죄(War Crimes) 또는
비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

다. 먼저 2차세계대전 직후 독일의 뉴른베르크에서 설치된 뉴른베르크전범재판소의 조레의 비인도적 범죄의 정의규정을 봅시다.

“살인, 인종말살, 노예화, 추방 그리고 전쟁중과 전쟁전을 불문한 민간인에 대해 저질러진 비인도적 행위, 또는 이 재판소의 관할권 아래 있는 범죄와 관련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행해진, 그러나 범죄행위지 국가의 국내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한 박해”

이 규정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조례 제5조에 그대로 승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규정은 이들 현장과 조레에 의하여 전세계적 규범성을 갖는 성문법으로 자리잡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시기부터 이미 존재하던 국제관습법의 내용을 성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예제 금지만 하더라도 이미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면서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잡아 1926년에는 노예제금지를 위한 협약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1932년 가입하여 당사국이 되었던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역시 국제노동기구에 의하여 1930년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이 역시 체결, 비준한 매춘을 목적으로 한 부인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도 1910년에 이미 성립되었고 1921년 보다 확대, 강화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타인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부녀를 권유, 유인, 납치하는 행위”(1910년의 조약 제1조), “같은 목적으로 사기에 의하거나 폭행, 협박, 권력남용 기타 일체의강제수단에 의하여 성년의 부녀를 권유, 유인, 납치하는 행위”(같은 조약 제2조)를 범죄로서 처벌할 것을 당사국에 요구하고 동시에 이같은 목적의 국제적인 부녀자 이동을 막기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제법적 발전은 ‘군위안부’와 같은 ‘성적 노예제’의 금지를 하나의 근본규범(Jus Cogens) 대열에 올려놓았고 움직일 수 없는 국제관습법의 위치로 정착시켰던 것입니다. 뉴른베르크조례이나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레등의 규정은 이와같은 국제관습법의 내용을 성문화하고 실제 적용하는 선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2) ‘군위안부’제도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

‘군위안부’로 징용당한 피해자들이 노예화상태에 있었으며 이들에게 성적 봉사 강요한 것은 고도의 비인도적 행위에 속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인종적 이유로 행해진 박해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어린 소녀들이 대거 위안부로 납치, 유인된 것은 인종적 이유로 가해진 하나의 박해이며 민족말살의 정책이기도 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항목을 구태여 따지지 않더라도 ‘군위안부’로서의 징용과 생활의 강요가 총체적으로 가장 지독하고도 견디기 힘든 인도에 대한 범죄의 형태라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행위가 인도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제2차세계대전 이후 벌어졌던 전범재판소 곳곳에서 민간인 부녀자에 대한 강간행위에 대한 처벌의 선례들이 명확히 해 주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군이 점령중이었던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란시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억류중이었던 네들란드 부녀자들을 위안부로 하여 강제매음케 한 범죄행위로 일본군 책임자들이 바르미아 전범재판소에서 처벌받은 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4. 수사와 소추의 법률적 당위성에 관하여

(1) 시효의 부적용에 관하여

일본형법은 모든 범죄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의 공소시효가 경과함으로써 처벌에서 면책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소시효는 (1)법정형이 사형인 범죄의 경우에는 15년, (2)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범죄의 경우에는 10년, (3)법정형이 10년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이상의 범죄인 경우에는 7년, (4)법정형이 10년의 유기징역이나 금고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이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형이 선고가능한 극악한 범죄조차도 15년의 경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해 집니다. 정신대와 관련한 범죄는 주로 1930년대에서 1940년대에 걸쳐 저질러진 것으로서 적어도 50년 이상을 경과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일본 국내법의 규정에 의해서는 더이상 이로 인한 범죄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추론과 결론은 국내법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입니다. 국제법에서는 전혀 다른 논리와 내용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즉 비인도적 범죄는 일종의 국제법이 규율하는 범죄로서 국내법에 적용되는 원칙이 유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 - - 나치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는 통상적 범죄와는 그 법률적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비인도적 범죄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전차(나치 범죄)는 국제공법(public international law)에 따르는 것이고 후자(통상적 범죄)는 국내법에 종속된다. 국내법률이 통상적 범죄에 관하여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그와같은 범죄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국제법에 종속되는 비인도적 범죄에 그같은 시효기간이 적용될 이유가 없다. 국제법에서는 일반적으로나 전쟁범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에 국한하여 시효제도에 관한 원칙이 없다. 국제법의 원리는 그와같은 범죄를 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인류가 영원히 나치의 독재와 잔혹성이 재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된 이같은 인류의 합법적인 소망에 따라 이같은 범죄의 기소와 처벌은 특정국가의 국내법의 관할에 포괄적으로 속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가들에게 부과된 국제적이고도 보편적인 의무로서 보아야 할 것이다.” (1964년 6월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법률가회의에서 채택된 선언, U. N. Doc. E/CN. 4/906, p. 107에서 인용)

‘인권과 기본적자유 보호를 위한 협약’(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에 구체화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유럽평의회 자문회는 1965년 1월 28일 제23차회의에서 비인도적 범죄에 적용되는 시효문제에 관하여 “비인도적 범죄가 국내법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조약을 기초하도록 정부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하는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의와 압력에 따라 오랜 논의를 거쳐 유엔 총회는 1968년 11월 26일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The Convention on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체결.비준을 위해 공개했던 것입니다. 이 협약은 그 서문에서 “당사국은 이 조약을 통하여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의 보편적 적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의적절한 것임을 인정”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협약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오던 국제관습법으로서의 국제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세계 도처에서 처벌되어 왔고 이 협약의 비준에 관계없이 많은 국가들이 이들의 처벌을 가능케하는 법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즉 이 협약이 동서의 냉전상황때문에 서방국가들에 의해 채택받았지만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대부분의 이들 국가들이 국내법으로서 나치전범의 추방, 처벌의 법체제를 갖추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지구상의 어느 국가도 이러한 처벌의 관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체제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체제와 관행에 따라 전쟁이 종결된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나치관련 범죄자와 그 동조자들에 대한 추적과 처벌의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일본이 위 협약을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위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시효부적용의 원칙에 관한 국제관습법의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첨가해 둘 것은 일본은 위 협약의 채택시에 기권하였지만 그 전 토론의 과정에서 그 내용에 반대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위 협약의 취지와 골격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2) 국제관습법과 일본국내법

이상과 같이 정신대의 설치, 운영과 위안부의 징용, 성적 강제행위가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가능한 국제관습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공소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의 국내 형법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일본헌법 제98조 제2항은 전후 서방국가들의 수준에 맞추어 일본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과 확립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립된 국제법규'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실시되고 있는 국제관습법"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원래 국제법규라고 하면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총칭하는 개념이지만 조약은 별도로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확립된 국제법규'속에는 국제관습법만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성실하게 준수한다'는 것은 일본의 국가기관 및 국민이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국내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즉 일본의 국가기관 및 국민이 조약과 국제관습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국제법상 어느 국가에게나 당연한 의무이지만 특별히 국내법상 법적 의무를 진다는 것이 이 조항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국제관습법이 일본 국내법으로 실시하는 조치없이 직접적으로 적용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남습니다. 이른바 '직접적 효력'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의회를 통하여 국내법으로의 전화(轉化)나 구체화하는 조치없이 막바로 그리고 지체없이 적용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 그와같은 전화조치없이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일반국민과 공무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은 개인의 권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규범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동설입니다. 나아가 일본의 압도적 다수 헌법학자들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일본의 국내법률에 우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인도적 범죄의 처벌의무나 그 범죄의 공소시효부적용 원칙따위의 국제관습법은 그에 배치되는 일본의 형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어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금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전쟁범죄와 비인도적범죄를 처벌한 일본의 법적 의무

위에서 본대로 '군위안부' 제도를 포함하여 일본이 저질른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확립, 발전되어온 국제법과 일본의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한 길을 나아가 이러한 범죄들을 처벌할 법적 의무를 일본정부가 지니고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정부가 이미 1925년(大正 14년) 가입한 위 '추업(醜業)'을 행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이 "타인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추행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부녀를 권유, 유인, 납치하는 행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기에 의하거나 폭행, 협박, 권력남용 기타 일체의 강제수단에 의하여 성년의 부녀를 권유, 유인, 납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를 체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처벌할 것을 법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군위안부로서 동원된 피해자들이 위 조약이 규정하는 범죄에 전형적으로 해당되고 있음은 다름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강제동원되기 시작한 일본정부의 위 조약 가입이후의 시점이며 그당시는 이미 위 조약이 일본정부를 구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처벌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조약상의 의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1930년 6월에 국제노동기구에 의하여 채택되고 1932년(昭和7년) 일본정부가 비준한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역시 군위안부제도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일본정부의 법적 의무의 근거입니다. 이 조약 제 25조는 "강제노동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서 처벌되게 하거나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는 형벌이 진실로 적당하고 엄격하게 실시되도록 확보할 본조약 비준, 체약국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약 역시 '군위안부'들에 대한 일본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에 유효하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약상의 일본정부의 처벌의무 역시 여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세째, 1945년 7월26일 이루어진 포츠담선언은 그 제10조에서 " - - - 우리들의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하여 일체의 전쟁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가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일본정부는 항복선언과 항복문서에서 연합국의 다른 요구와 함께 이 포츠담선언도 함께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일본은 전후 전쟁의 와중에서 있었던 전쟁범죄를 처벌한다는 연합국의 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포츠담선언을 수용한 일본정부는 연합국의 점령 전후를 따질 것 없이, 연합국의 편여를 불문하고 전쟁범죄인을 처벌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째, 연합국의 점령기간 중 일본 본토를 위시하여 일본이 한 때 점령하였던 아시아의 곳곳에서 전범재판이 열려 다수의 일본제국 군대의 지휘관과 사병, 군속과 민간인들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 처벌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군위안부'들과 관련하여 바트비아전범재판소에서 다수의 일본군인들이 처벌된 것도 그 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1952년 체결된 연합국들과 일본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제11조에서 "일본국은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및 일본국내, 국외의 다른 연합국전쟁범죄법정의 재판을 수락"한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위 연합국의 전쟁범죄재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오히려 그 재판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결의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트비아전범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네덜란드 여성에 대한 군위안부생활의 강요가 전쟁범죄이며 그 처벌의 당위성을 일본정부가 시인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네덜란드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든 죄로 일본군인이 처벌받았다면 동시에 한국과 필리핀, 중국출신의 군위안부에 대한 범죄행위도 처벌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백인과 서양인에 대한 범죄는 처벌받고 동양인에 대한 같은 범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법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서간의 명백한 차별이요, 형평의 위배입니다.

5. 피고발인들 처벌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관하여

(1) 아물지 않는 고통

전쟁이 끝난후 요행히 살아남아 조국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에게도 재생의 길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정조를 생명만큼이나 중시하는 봉건적 한국사회에서 비록 강제이기는 하였지만 일제에 의해 끌려가 수없이 정조를 유린당한 이들이 안정된 가정을 꾸릴 분위기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조사보고를 보

“귀향 후 전위안부들은 위안부였다는 자격지심, 위안부 생활에서 얻은 병, 주위의 사시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했다. 본조사의 19명 중 6명이 결혼했으나 그 중 5명은 재취했으며, 6명 모두가 결혼에 실패했다. 8명이 동거 또는 둘째부인으로 가정을 가져본 경험이 있으나 대부분 실패했다. 5명은 전혀 결혼하지 않았다. 현재 2명만이 자신이 낳은 자식과 함께 살고 있으며, 1명이 수양아들과 다른 한며이 데려다 기르는 손주와 함께 살고 있다. 나머지 15명은 모두 혼자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또 건강면에서 매우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를 증언집 I, 한울, p. 28)

그 고통은 세월이 흐른다고 가벼워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세로워지고 무거워지는 고통입니다. 위에서 본 것 처럼 정상적인 가정을 가질 수 없었던 그들은 노후를 의지할 남편이나 자식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극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지니게 된 질병입니다. 이들의 온 몸은 ‘군위안부’로서 생활하면서 당한 온갖 상처투성이가 얼룩져 있습니다. 자궁과 항문이 판통되어 있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저항하다가 가슴이나 유방에 칼로 찢린 흔적들도 있습니다. 당시의 고통스런 생활은 방광염, 자궁병, 위장병, 빈혈 등 온갖 증세의 병으로 연결되어 이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피해자가 이러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으로 시달리는 형편입니다. 아마도 그 비인간적 상황과 경험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멀쩡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음의 어느 정신대 할머니의 고백은 모든 피해자에 공동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나는 서튼이 넘어가면서 불안증이 생기고 정신이 막 혼동되는 증세가 계속되었다. 갑자기 영감이 싫어지고 소름이 끼쳐 나가라고 소리도 지르고 발광을 했다. - - - 그래도 사람소리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불안하고 무시워서 문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들어오게 했다. 텔레비전에서 웅소리를 듣고 몇번을 졸도를 했다. 사람만 보면 무섭고 무슨 소리만 들려도 떨려 방에 들어앉아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생활을 근 30년간이나 했다. 지금도 신경안정제가 없으면 불안해서 아티판을 먹고 있다.”(피해자 최명순의 증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회 편, 위의 책, p. 268)

더욱 슬픈 일은 이들의 고통이 자신의 당대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이들은 오히려 행복한 편에 속합니다. 어쩌다 자식을 가졌던 이들, 또는 그 가족들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치떨리는 경험을 그대로 상속받고 있습니다. 바로 위 증언자의 이야기입니다.

“- - -그런데 그 아들이 멀쩡히 잘 살다가 마흔살이 넘어 갑자기 신경발작증을 일으켰다. 그래서 청양리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때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갔었다. 의사가 가족들은 다 나가 있으라 하더니 나한테 혹시 그 전에 매독을 앓다가 낳은 것이 아니냐고 해서 고개 숙이고 눈물만 흘리다 나온 적이 있었다. 그저 내가 죄인이었다. 자식 신세까지 그렇게 만들어 놔오니. 댕속에서 멀쩡히 나와 성한 줄 알았지 그게 40년 만에 정신병원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큰아들은 지금도 한달에 한번씩은 발작을 한다. 제가 더러운 개구녕에서 나와 이렇다고. 의사가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하면서 작년에 애미를 죽이겠다고 집안살림 다 집어딘지면서 달려들었다. 너무 무서워서 그 길로 아들 집을 나와 막내딸 집으로 왔다. 큰 아들이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 며느리는 집을 나가버렸다.”(피해자 최명순의 증언, 위의 책, p. 269)

대를 이어 세습되고 있는 고통의 본질을 위 증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 아픔은 결코 한 세대에 끝날 수 없는 지독하고도 끈질긴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발인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한 가해자들이 추호의 반성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처벌도 받음이 없이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 이상 그것을 일러 정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가련한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를 법정에서 세움으로써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큰 고통을 감경해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2) 버려진 희생자들의 운명과 법적 구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군위안부' 제도의 진상을 알고 이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물려들었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글로써, 돈이 있는 사람은 금전으로써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들에 대한 연구논문을 쓰고 있고 지구상의 여러곳에서 이 문제에 관한 토론회와 세미나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여러나라의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심심치 않을 정도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관과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권단체들이 이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노력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고무하고 격려하고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도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진상의 조사, 이에 따른 민사적 배상, 책임자의 처벌등이 이들이 바라는 바요, 국제법이 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과 요구가 실현되기에는 너무도 큰 장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일본정부 자신입니다. 위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일본정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점증하는 여론에 따라 사회의 의사표시와 일본군의 관여사실을 시인하기에 이르렀으나 진실로 이 문제를 인도적 또는 법적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에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일본정부의 태도가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산하의 기관들이 보존하고 있는 관련문서들조차 완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정부가 이러한 자료들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스스로 조사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진상조사에 나선다면 정신대라는 희대의 범죄적 음모와 구체적 실행과정은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소속 국가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있습니다.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동정적이지 않을 리는 없으나 이들 국가들은 이미 일본과의 경제적 교류, 의존관계 때문에 전면적으로 일본정부에 대하여 해결을 위한 담판과 압력을 가할 수 없는 처지임이 분명합니다. 지난번 호소가와 수상의 방한시 한국정부가 보인 태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호소가와 수상의 사죄와 반성의 의사표시로 이 문제는 양국간에 더이상의 외교현안이 되지 못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회담에서 내내 강조된 것은 양국간의 미래지향적 관계의 정립이었고 이것은 바로 과거사의 매몰(埋沒), 위안부 문제의 폐기임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및 다른 아시아 피해국가들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유엔이 이 문제를 논의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소위원회나 워킹 그룹(Working Group)에서는 장시간동안 이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하여 논의를 거듭해 왔고 진상조사에 나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정치무대의 강자로 등장한 일본의 압력이 '군위안부' 제도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적지 않은 힘을 행사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유

엔 재정의 10%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의 입김이 유엔의 마당에서 세어져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영향력은 당장 부투르스 부투르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우호적인 대일관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국제적 관여와 개입을 청원한 바 있는 것입니다. 2차세계대전이 인류에게 남긴 재앙과 참화에 대한 교훈으로부터 탄생한 유엔이 바로 그 당시의 문제인 정신대문제를 사실상 내팽개치고 있는 사실은 대단히 아이러니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더구나 유엔의 논의 구조는 너무나 너스레하고 시간소모적인 것이어서 설사 어떤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생존하고 있는 희생자들의 사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고려에 의해 움직이는 이러한 국내외의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바로 법적인 해결입니다. 우리는 법적 정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라”라는 법적언대로 법률가들이 정신대 피해자들의 고통에 찬 목소리와 이들이 당하였던 명백하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를 외면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희생자들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무엇이 번이고 무엇이 정의인가를 선언하는 길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3) 동서가 다를 수 없는 인도와 정의

전쟁이 가져온 참혹함과 잔인함은 동서고금이 나를 수 없습니다. 제2차세계대전기간 중에 벌어졌던 해야될 수 없는 종류의 잔혹한 범죄행위는 이미 잘 보고되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몸서리쳐지는 이와같은 범행은 전쟁이 있는 모든 곳에서 저질러졌으며 주변 전쟁지역이었던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후 과거와는 달리 이 참혹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이성과 지혜가 이제 더이상 이와같은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수립된 이러한 합의와 여론에 따라 패전국인 독일의 뉘른베르크와 일본의 동경에 전범재판소가 설치되어 수십명의 주요 전쟁지휘자와 수백명의 비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이 재판을 받고 처형, 또는 감옥생활을 해야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합국에 의해 세계 곳곳에서 전범재판소가 설치되어 수천명에 이르는 전범들이 처단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연합군에 의한 재판이 끝난 이후였습니다. 서독의 경우 1945년 5월 8일부터 1968년 1월 1일까지 77,044명의 전범 및 비인도적범죄자 용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가운데 6,192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2명이 사형, 90명이 무기징역, 5,975명이 유기징역, 나머지 114명이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동독에 있어서도 경쟁적인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1945년 5월 8일부터 1964년 말 현재까지 16,572명이 전쟁범죄와 인도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어 118명이 사형, 231명이 무기징역, 5,088명이 유기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독일인 자신의 손에 의해서 독일나치 전범들이 처벌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전지구상에서 나치전범들의 추적은 끝없이 진행되었으며 수많은 나라에서 나치전범에 대한 추방, 나치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었습니다. 바로 몇달 전 유대인강제수용소의 경비병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공포의 이반’ (Ivan the Terrible)이라고 알려졌던 뎀얀유크(Demjanjuk)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재판받았으며 프랑스에서 독일 나치의 유대인 강제수용소 송환에 협조하였던 프랑스의 비쉬정권 당시의 경찰책임자 1명이 비인도적 범죄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도중 어느 유대인에 의하여 암살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나치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들에 대한 추적과 재판은 지금도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군이 물러간 후 일본에는 몇명의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들이 일본 자신의 법정에 섰습니까? 난 한명, 난 한건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그들 범죄자를 색출하는데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미 연합군에 의하여 진범으로 처벌받은 군대지휘관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연금해택을 주기에 바빴으며 그들을 처벌하였던 이른바 동경재판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공격하는데 힘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에도 이들 범죄자들에 의하여 동원된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되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고통에 동서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어린 부녀자들을 군인들의 성욕반으로 내몰은 행위가 서양에서는 죄가 되고 동양에서는 죄가 되지 않을 리 만무합니다. 서반구에서 벌어진 전쟁범죄는 지구의 끝까지라도 시효없이 처단되어야 하고 태평양에서 벌어진 비인도적 범죄는 전쟁직후에 모두 공소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동서양의 구별없이 그것이 잔혹한 범죄인 한 동일하게 처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 고발의 계기와 의미에 관하여

(1) 고발의 계기와 일본검찰당국의 명예

우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국제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정신대 제도의 설치와 운영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처벌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우선 이 문제가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피해국가들 사이에 종래 우리가 요구해 왔던 기본적 사항들을 수용하는 합의를 타결해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대와 희망은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정부는 끝끝내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며 사태의 본질적 해결에 성의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일본정부에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정부가 그토록 무성의하고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면으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 방식을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참혹한 범죄를 저질른 사람을 색출해 내어 법정에 세우고 이들에게 응분의 처벌을 하라는 요구를 말입니다.

물론 일본 검찰당국이 과연 종래의 일본 정부의 태도와 다를 게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줄만한 자료의 공개조차 거부해 왔던 일본정부의 태도에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실망해 왔고 속상해 왔습니다. 일본검찰이 우리의 고발에 따라 무언가 숙시원한 해결책과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인가 회의할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구심과 회의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일본검찰에 우리는 부여해 주고자 합니다. 일본의 검찰이 전후 50여 년간에 걸쳐 보여준 정의감과 용기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편부당한 수사로 수차례 내각의 도괴(倒閣)에 까지 이르게 된 사실은 일본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징하는 증거들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본검찰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 사건에도 발휘해 보여야 할 때입니다. 비록 이사건의 피해자들이 외국인들이고 그 범죄행위가 오랜 세월 전에 저질러진 것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향한 용기와 법률적 정의를 제대로 세우겠다는 결의만 분명하다면 전혀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잔혹한 범죄 앞에 외국인이라는 신분과 세월의 경과가 문제될 수 없음은 이미 본 그대로입니다. 이 한 사건에 일본 검찰의 자존심과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성의있는 수사와 내실있는 결론을 내는가는 전적으로 일본 검찰당국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영원히 인류의 역사위에 그 방향과 내용에 따라 인간이성의 한 승리로써, 또는 인류양심의 한 좌절로써 기록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2) 고발의 역사적 의미

---일본의 양심에 묻는 우리의 질문

지금까지 '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의 법정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전적 보상의 요구를 해 온 적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면서 형사고소와 고발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군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한 전후보상운동이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고소와 고발은 단순히 전쟁의 피해자들이 돈을 바라고 부자가 된 일본을 귀찮게 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어떤 보복이나 원한을 풀기 위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군위안부'의 피해자들과 우리가 이렇게 나선 것은 바로 정의를 회복해야겠다는 일념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뒷마당에서 이루어지는 타협도 아니고 일본정부가 동정에 의해 지급하는 시혜조치도 아닙니다. 인류가 발전시켜온 도덕과 정의의 기준에 맞추어 이 문제를 재단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이요, 요구입니다. 그것은 이같은 엄청난 불행과 고통이 다시는 인간의 역사 위에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아시아지역의 민족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정착할 것입니다.

일찌기 2차세계대전 직후부터 모든 나치장교들의 파일을 관리하는 센타를 설치하고 끝없이 이들의 뒤를 쫓는데 한평생을 바쳤던 시몬.비센탈(Simon Wiessental)은 이 집요한 추적의 동기를 묻는 기자들에게 단 한마디로 코멘트 하였습니다. "보복이 아닌, 다만 정의를 위하여"(Not Revenge, but Justice).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고발은 보복이 아닌 정의를 향한 호소입니다. 수십만의 어린 소녀와 부녀자를 그 지옥같은 군위안소에 보내야만 했던 고난의 민족이 그 울분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고통을 어느 민족도, 어느 누구도 맛보아서는 안된다는 아시아 인민과 전세계인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일본의 양심과 도덕성을 향하여 던지는 우리의 질문이요, 항변입니다. 이제 일본 검찰이, 일본의 양심이 답할 차례입니다.

1994년 2월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일본국 동경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